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942
----------	-----

제 안 년 월 일 : 2023년 06월 21일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문성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0호)와 서상열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3호),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74호),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03호), 강석주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59호) 이상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2023년 6월 21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 시립체육시설의 이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완화하

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체육시설 만족도를 제고하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혜택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대안을 제안하고자 함.

### 3. 대안의 주요내용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시립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조건으로 신설함. (안 제5조의3)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입장료 면제와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제9조 안 제10조)
- 시립체육시설로 인한 소음·교통체증 발생 지역의 개인연습사용료와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하도록 함(안 제10조)
-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들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마을축제,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전용사용료를 100분의 30으로 감액함(안 제10조제5호바목)
- 시립체육시설의 예약 취소 위약금 상한액을 완화함(안 제11조)
- 상업사용료 내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행사관련 물품판매를 위한 판매부스 1개당 최소가격을 제10조제5호바목의 행사인 경우 30%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5 비고란 제7호)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제3항제1호 후단 중 “사람,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면제

제10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제10조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제10조제5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해당 시설 자치구 소재 단체로 한정)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마을축제,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3의 사용료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가. 신청 당일 : 전액 반환

나. 10일전 : 전액 반환

다. 5일전 : 10분의 9

라. 1일전 : 10분의 7

제11조제2항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를 “사용료 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조의3에서 제한하는 행사

별표5의 비고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0조제5호바목의 행사에 대해서는 판매부스 금액을 30%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 4. (생략)

5.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가. ~ 마. (생략)

<신설>

바. (생략)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②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신설>

1. 별표 3의 사용료. 다만,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다.

가. ~ 라. (생략)

2.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해당 시설 자치구 소재단체로 한정)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마을축제,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사. (현행 바목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② -----  
-----  
-----  
-----.

1. 별표 3의 사용료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가. 신청 당일 : 전액 반환

나. 10일전 : 전액 반환

다. 5일전 : 10분의 9

라. 1일전 : 10분의 7

2. ----- 사용료 시설. 다만, 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 ⑤ (생략)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1.~  
2.(생략)

<신 설>

[별표 5]

상업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일, 단위 : 원)

구 분	금 액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	판매부스 1개당(5㎡ 기준) 50,000~65,000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1.~  
2. (현행과 같음)  
3. 제5조의3에서 제한하는 행사

[별표 5]

상업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일, 단위 : 원)

비고	7. 제10조제5호바목의 행사에 대해서는 판매 부스 금액을 30% 감면할 수 있다.
----	---